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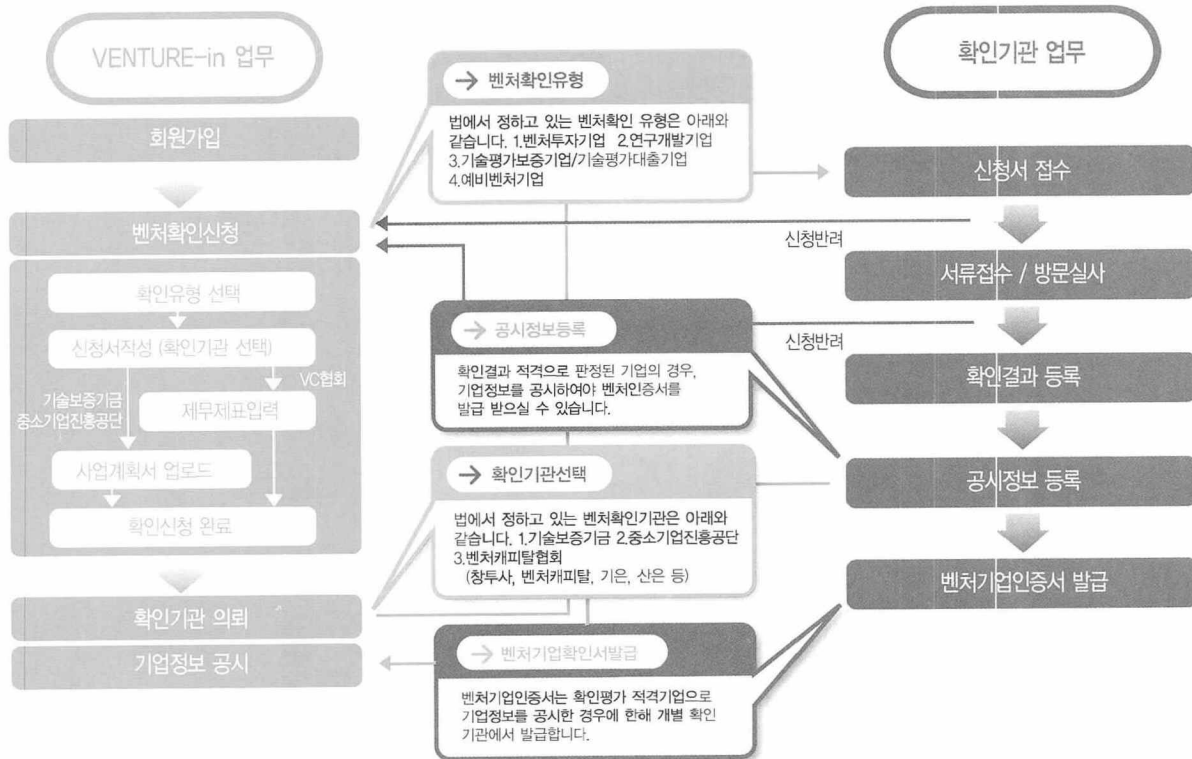
벤처인 Venturein에서 신규 벤처 신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난 2006년 6월 4일부터 벤처인증신청기관이 벤처넷에서 기술보증기금이 관리하는 벤처인 www.venturein.or.kr으로 변경되었다.

금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다. 신규 벤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벤처인 고객센터 051-460-2584)



변경된 벤처확인요건

변경	- 유효기간 : 유형 구분없이 1년으로 통일 - 벤처확인기관 : 기금,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폐지	- 1단계 혁신능력평가제도 폐지 - 신기술평가기업
신설	- 벤처기업의 유형별 요건 : 기술평가(보증/융자)금액이 8천만원 이상 + 총자산의 10% 이상 + 기술성평가 우수 - 벤처기업 정보공시 의무화
요건추가	- 요건추가벤처투자기업 +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연구개발기업 + 사업성 평가 우수

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firstpr@kova.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